

2026 「소상공인 가업승계(충남이어家)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과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하기 위한 2026년 가업승계(충남이어家)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재)충남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모집규모) 30업체

(지원대상) 동일 업종(업태)에서 2대 이상 대를 이어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승계 완료 및 승계 예정 포함)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소상공인 범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주업종 판단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된 업종

[가업승계 인정 기준 예시]

① 승계 완료 유형(예시유형 1대 → 2대)

- 1대와 2대 사업기간 합산 10년 이상 소상공인

(유형 1) 1대와 2대의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유형 2) 1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2대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한 경우

- 1대는 신문기사, 기고문, 무형문화유산 지정서 등으로 발간일, 지정일 등 기간이 확인이 되어야 함(단, 업력은 1대 미 인정, 2대만 인정)
- 2대는 사업자등록 기준 10년 이상 사업 운영을 해야 함

② **승계 예정 유형**(예시유형 1대 → 2대)

-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승계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상공인

(유형 1) 2대가 사업 운영 중이나, 1대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한 경우

- 2대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으로 근무이력이 입증이 되어야 함
- 가업승계 예정 확인서 필수 작성(선정 후 승계 완료 필수)

(유형 2) 1대가 사업을 운영 중이나, 2대로 가업승계 예정인 경우

- 가업승계 예정 확인서 필수 작성(선정 후 승계 완료 필수)

※ **승계 예정인 경우: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1대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2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15~25년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충남노포, 충남이어家 수혜자)
- 24~26년 희망리턴패키지 중도 포기 및 국비 환수 대상자
- 24~26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국비) 수혜자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영지원금(최대 7백만원, VAT 제외)

※ **경영지원금 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세(VAT 10%)는 소상공인 자부담**

- 인증현판 제공

- SNS 홍보(브릿지 청년 서포터즈) 제공 등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충남) 연계**

(기본교육) 2026년 6월(예정), 보조금 관련 교육(**불참시 선정 취소**)

※ 선정업체에 한하며 세부내용 개별 안내, 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분야)

구분	세부 내용
작업환경개선	• 닥트, 미세물질 저감시설, 유해물질 제거, 소음방지시설, 습기제거 환기설비 등
점포환경개선	•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 점포 내 도배, 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 좌식 → 입식 테이블 교체 (음식점에 한함) ※ (지원불가)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 시 지원 불가
위생 및 안전관리	• 점포 내 노후설비 교체, 가스, 화재 점검 및 관련 시설 교체 등 ※ (지원불가)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가구집기 등 자산 취득성(처분 가능한) 항목
시스템개선	•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신규 설치 ※ (지원불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추가 설치

3.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 (대면평가 6월)	결과 발표 및 교육 (서포터즈 모집)	인증현판 수여	사업 수행	결과 보고 및 정산 (지원금 지급)
진흥원, 선정평가위원회	⇒ 진흥원	⇒ 진흥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진흥원
4월~6월	6월	7월	7월~9월	10월~11월

※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 · 접수

(신청기간) 2026. 4. 24.(금) ~ 5. 20.(수) 16:00까지

(신청방법) 판판대로 홈페이지(<https://fanfandaero.kr>) → 소상공인 사업공고
→ 검색창(소담스퀘어 in 충남) → 사업신청(※통합기업 회원가입 필수)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모두 필수 서류이므로, 1가지라도 미제출 시, 사업 신청 불가함

구분	제출서류	발급서류 및 방법	
공통 서류	① <서식 1> 사업신청서	https://www.cnsp.or.kr/main.do 서식 다운로드 → 작성	
	② <서식 2> 추진계획서		
	③ <서식 3, 4> 개인정보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① 온라인 발급: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⑤	■ 가업승계 완료인 경우 - 가업승계 확인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폐업사실증명원, 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
		■ 가업승계 예정인 경우 - <서식 5> 가업승계(예정) 확인서	https://www.cnsp.or.kr/main.do 서식 다운로드 → 작성
	⑥ 가족관계증명서(전대 사업자, 현재 사업자 관계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납세 확인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① 온라인 발급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지방세)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발급	
소상 공인 확인 서류	⑧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2개년) - 2024년 / 2025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발급: 홈택스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세무서	
	⑨	■ (고용인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 (고용인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① 온라인 발급: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② 오프라인 발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방문
가점 확인	⑩ 가점 확인서류	관련 자격증, 지식재산권, 지정제도 여부, 포상 및 지역사회 공헌 자료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사업계획 발표 및 심사)
- (1차 평가) 신청자격 검토 및 경영현황 서류 평가
 - ※ 경영현황: 매출 증가율(↑), 월평균 매출액(↑), 업력(↑), 고용(↑)
 - ※ 접수 및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1.2배수 내외 대면평가 대상 선정
- (2차 평가) 선정평가위원회(외부위원) 구성 및 대면평가(업체당 20분 내외)
 - ※ 평가항목: 가업 승계자 경영 역량, 상품 및 점포 경쟁력, 경영 지속 가능성
 - ※ 평가방식: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선정기준) 1차 서면평가(30%) + 2차 대면평가(70%) + 가점 합산
- (선정규모) 상위 30업체(예비업체 3개 내외)
- (가 점) 최대 8점부여(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가점 세부 사항]

구분	배점	세부내용
자격/지식재산권 보유	3	· 자격증 사본(해당 업종 국가공인), 확인증 제출
지정제도 지정여부	3	· 착한가격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착한일터, HACCP,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인증서
사회공헌 (최근 3년 이내)	2	· 공고일 기준 기업명/대표자명 기재만 인정 · 봉사(봉사활동1365 또는 시군, 단체 확인증) · 기부(영수증: 종교단체, 정치기부 제외)

- 정산 및 결과 제출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완료보고서(성과), 정산보고서(거래증빙 포함),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
 - 정산요령
 - (거래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 ※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계약 및 공통 서류) 견적서(200만 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여부 확인 필수
 - (공사 및 용역 수행 시) 전/중/후 사진 증빙, 용역 결과물 및 수행 증빙 등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선정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제작)한 경우
- 사전변경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원분야 사업수행 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제 부실 등 충남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행업체와의 부당거래(제작비 청구 등)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소요비용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은 감액 지원 가능하나,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하여야 함
- 선정 후 지원 분야 변경 불가

(수행업체 선정 방식)

- 수행업체는 과제 수행 능력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에 관련 분야가 명시된 업체로 선정하며, 충남 권역 내 업체를 우선 권장함
- 견적서 필수
 - 견적서: 200만 원 미만 시설집기, 공사, 용역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200만 원 이상 시설집기, 공사, 용역 등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
 - ※ 간판 및 광고물 설치 전 ‘설치 가능 여부’ 사전 검토 필수
 - (허용되지 않는 곳의 설치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 신청자 부담)
-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수행업체 선정 불가
- 협약체결 이전에 완료 또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 지급 방식)

- 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 일체 포함 제출
- 지원금은 완료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신청 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구매 물품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미보유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조치 및 최대 3년간 충남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